

□ 제300회 이사회 의사록

회차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안내용	가결여부
제300회	2026. 5. 21.	유일용 류윤기 박재룡 이영철 박미진 이종호 유광조 조동구 임재욱 박희정 김지호	<p>□ (제1호)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안</p> <p>○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년 1월부터 ‘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안’ 수립을 통해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관련 규정 마련 -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한 사내 공통 지급규정 마련 <p>○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출산축하금 추가(안 제7조) - 직책수행비 내용 관련 조항 신설(안 제8조) -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및 신청 관련 내용 신설(안 제8조의2) - 자구 수정 및 출산축하금 지급구분표 신설 	수정가결
			<p>□ (제2호) 회계규정 일부개정안</p> <p>○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권익위원회 지정금융기관 선정기준 마련 권고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- 개정된 「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반영,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- 계약 및 지출업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재정사항 합의생략 대상에 맞춰 지출 관련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<p>○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정금융기관 선정 지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0조 제2항) -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(안 제153조제2항제2호) - 지출예산 집행기준을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에 맞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 	수정가결

회차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 안 내 용	가결여부
			<p>□ (제3호)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</p> <p>○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市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고도화 및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<p>○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제규정에 명시된 기구표 변경 - 市 협의된 정원증원(30명) 반영 및 직급별 정원 최적화 	원안가결
			<p>□ (제4호) 직제규정 일부개정안</p> <p>○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市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고도화 및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<p>○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구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의 정리(안 제10조) - 직제규정에 명시된 기구표 변경 - 제12조(정원)의 정원표 변경 	원안가결